

박형준 / 5월+6월 / 기출GS / 5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응시인원
562380	17	11.5	18	11.5	58	1	2.22%	5	45
562576	17.5	10	17	12	56.5	2	4.44%	5	
562188	17	11.5	17	9.5	55	3	6.67%	4	
565042	15.5	11	16	12	54.5	4	8.89%	4	
565128	18	10	16.5	10	54.5	4	8.89%	4	
565263	15	11.5	16.5	10.5	53.5	6	13.33%	3	
563199	17	9.5	15.5	10.5	52.5	7	15.56%	5	
562813	17.5	10	14	10	51.5	8	17.78%	3	
565364	16.5	8.5	15.5	10.5	51	9	20.00%	4	
563423	15	8.5	15	12	50.5	10	22.22%	4	
563528	15	9.5	15.5	10	50	11	24.44%	4	
563757	15	12	14.5	8.5	50	11	24.44%	4	
564844	17.5	10.5	13.5	8.5	50	11	24.44%	4	
563311	16	11	12.5	10	49.5	14	31.11%	5	
562320	14	9.5	15.5	10	49	15	33.33%	4	
562403	15	10	14	10	49	15	33.33%	4	
562434	15.5	9.5	15	8.5	48.5	17	37.78%	5	
563520	15.5	8	15	10	48.5	17	37.78%	4	
563443	15	9.5	14	9.5	48	19	42.22%	4	
563029	15	8	17	7.5	47.5	20	44.44%	4	
565032	14.5	9.5	15.5	8	47.5	20	44.44%	5	
562176	14.5	11.5	12	9	47	22	48.89%	4	
561602	14.5	9	13.5	8.5	45.5	23	51.11%	4	
565337	13.5	9.5	13	9.5	45.5	23	51.11%	4	
562397	15.5	11.5	15	2.5	44.5	25	55.56%	4	
563344	13	9	14	8.5	44.5	25	55.56%	4	
562305	15.5	6.5	10.5	11.5	44	27	60.00%	5	
563002	14	8.5	13	8.5	44	27	60.00%	4	
562578	15	9.5	12.5	6.5	43.5	29	64.44%	4	
562350	16	6.5	14.5	6	43	30	66.67%	5	
562508	16.5	7	11.5	8	43	30	66.67%	5	
562189	14.5	9.5	10	8	42	32	71.11%	3	
565351	12.5	8	12.5	9	42	32	71.11%	5	
562358	13.5	9	11.5	7.5	41.5	34	75.56%	5	
562227	13.5	7.5	10.5	10	41.5	34	75.56%	5	
563288	16.5	6	13.5	4.5	40.5	36	80.00%	5	
562408	17.5	10.5	11.5	0	39.5	37	82.22%	5	
562924	16	10.5	8.5	4.5	39.5	37	82.22%	4	
556691	15.5	3.5	14	5	38	39	86.67%	4	
562783	12.5	3.5	11	9	36	40	88.89%	4	
565403	13.5	8	12	0	33.5	41	91.11%	4	
562342	12.5	6.5	9	5	33	42	93.33%	3	
562326	12.5	5	9.5	4	31	43	95.56%	4	
564269	10.5	6	7.5	5	29	44	97.78%	4	
562372	13.5	0	12.5	0	26	45	100.00%	5	

<p style="text-align: center;"><b>박형준/5월/기출GS/5회/1번</b></p>	<p><b>채점자</b></p>
	<p><b>박수홍</b></p>
<p><b>1. 전반적인 총평</b></p> <p>안녕하세요. 박형준 특허법 기출GS 채점을 맡은 박수홍입니다. 5회는 2025년 62회 기출문제였습니다. 직접 경험했던 회차인 만큼 받은 점수들을 토대로 채점하면서 느낌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1번은 독점적 통상실시권과 함께, 국내 생산간주 관련 최신판례가 섞인 문제였습니다.</p> <p><b>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b></p> <p>(1) 설문 1</p> <p>설문 1의 경우 병의 전용실시권과 을의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비교 설명하는 일종의 단문 문제입니다. 독통 관련 논점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도 한 만큼 논점 자체는 친숙했을 것이나, 목차 구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교설명하라고 한 만큼,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각적으로 기술해주신 경우가 가장 인상이 좋았습니다.</p> <p>(2) 설문 2</p> <p>설문 2는 무단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에 대해 독통권자 을이 “특허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보통 독통권자의 손해청구 가능 여부 대해서는 특허법상 불가하고 민법상 가능 또는 대위청구 가능 이라는 하나의 템플릿으로 기억하고 계실 것이고, 그에 따라 답안도 민법상 손해청구에 대한 비중이 큰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물어보는 것이 특허법 상 손해청구인 만큼, 민법상 손해청구 판례도 작성하시되, 답안의 흐름이 너무 민법에 치중되는 것은 지양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p> <p>(3) 설문 3</p> <p>설문 3은 13종 개별원액 판례를 타겟팅한 설문으로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판례 작성해주시고 사안포섭 해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잘 작성해주셨으나, 일부 판례와 반대로 답안을 작성하신 경우도 있었는데, 물론 국내 생산간주 요건을 만족하는지는 사실관계 상 불분명하나, 최신판례의 사실관계를 가져</p>	

온 만큼, 결론도 판례대로 따라가는 것이 방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3) 설문 4

설문 4는 간접침해 관련 논점이었습니다. 해당 논점의 경우 구법하의 국내 생산만을 의미한다는 판례의 입장을 잘 작성해주시는 것이 중요했으나, 개정법에서 전용품의 실시예 수출이 포함된 이상, 해당 논의를 작성해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3. 소결

최신판례가 출제될 경우 실전B에서 충분히 대비하셨다는 점과, 중요도를 높게 가져갔다는 점에서 대부분 잘 작성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판례의 현출도와 포섭 면에서 차별점을 들 수 있으므로 최신 판례의 경우 판례집 꼼꼼히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b>박형준/5월/기출GS/5회/2번</b></p>	<p><b>채점자</b></p>
	<p><b>박수홍</b></p>
<p><b>1. 전반적인 총평</b></p> <p>문제 2번은 허가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제도 관련 최신판례에 기초하여, 연장등록된 특허권의 효력 관련 기존 중요 판례가 함께 출제된 문제였습니다. 워낙 A급으로 찍히던 논점이었던 만큼, 논점 자체는 친숙하셨을 것 같습니다.</p> <p><b>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b></p> <p>(1) 설문 1</p> <p>설문 1은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식재산처의 결정을 물었습니다. 특히 최신판례가 그대로 타겟팅된 문제이므로, 판례 현출도 좋게 작성해주셔야 하고, 포섭 역시 판례의 논리에 따라 논리적으로 포섭해주신 경우 좋은 점수 드렸습니다.</p> <p>아무래도 작년에 크게 출제된 만큼, 올해 출제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되어 해당 판례를 버렸는지 판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지 못한 답안이 많았습니다. 물론 확률 상 출제 확률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경우, 날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p> <p>(2) 설문 2</p> <p>설문 2는 연장등록된 특허권의 효력을 묻는 문제로서, 학설 대립과 함께 판례 통통하게 작성해주시고, 포섭 역시 판례 논리대로 따라가주시면 됩니다. 판례가 실시한 요건 별로 소목차를 나누어 포섭해주신 경우 가독성이 더 좋았습니다.</p> <p><b>3. 소결</b></p> <p>허가에 따른 연장등록출원 제도의 경우 중요 판례가 존재함에 그동안 기출로 출제된 적이 거의 없어 A급으로 찍혔던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작년 출제로 중요도는 조금 낮출 수는 있으나, 언제 출제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부분인만큼,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p>	

<b>박형준/5월/기출GS/5회/3번</b>	<b>채점자</b>
	<b>박수홍</b>

## 1. 전반적인 총평

문제 3번은 복수 청구항이 존재할 때 출제될 수 있는 다양한 논점들이 섞인 복합형 문제였습니다. 시간의 압박과 긴장 속에서 실수하기 좋은 논점들이 많음, 문제 꼼꼼하게 읽고 답이 틀리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 (1) 설문 1

설문 1-1은 청구항 일부 취하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로서, 일부취하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보정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보정 규정에 따라, 보정 기간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반려해야 한다는 논리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설문 1-2의 경우 거절결정에 대한 조치로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선결적이고, 불분명 하므로, 상황에 따라 거불복 또는 재심사청구, 분할출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잘 작성해주셨습니다.

### (2) 설문 2

설문 2는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의견제출기회가 부여되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즉, 주된 취지가 부합해야 하는데, 해당 사실관계의 경우 주된 취지가 부합되는 거절이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적법합니다. 이런 설문의 경우 답을 틀릴 경우 점수차이가 꽤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3) 설문 3

설문 3의 경우 특허권의 공유 상황에서의 조치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A사에게 발명의 생산을 의뢰하였다는 점에서, 실시권을 부여한 것인지, 1기관 판례에 따라 공유자인 갑의 실시로 볼 수 있는 것인지가 불분명 하기 때문에, 답안 작성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다만 A사의 침해여부는 반드시 선결적으로 검토해주셔야 하고, A사가 비침해 시에도 을은 갑에게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침해 시에는 침해 관련 사민형기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3. 소결

저도 해당 문제 1번 설문에서 반려 처분은 부적법하다고 반대로 갔고, 3번에서 공유물 분할청구를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디테일한 모든 논점을 찾아 완벽하게 답안을 작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당황스러운 경우 눈에 보이는 큰 논점들 위주로 천천히 작성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저 같은 답틀을 피하기 위해 기본기를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b>박형준/5월/기출GS/5회/4번</b></p>	<p><b>채점자</b></p>
	<p><b>박수홍</b></p>
<p><b>1. 전반적인 총평</b></p> <p>문제 4번은 공동발명에 대한 논점이었습니다. 해당 논점 역시 대부분의 수험생들에게 친숙할만한 논점이었습니다. 대부분 논점 잘 찾아주셨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답안을 잘 작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p> <p><b>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b></p> <p>(1) 설문 1</p> <p>설문 1의 경우 우선 공동발명자가 누구인지를 잘 검토해주시고, 그에 따라 A사의 특허출원의 하자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에 따른 을의 조치는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작성해주시는 것이 가장 인상이 좋았습니다. 공동발명인지 구체적으로 포섭해주신 분들에게 더 좋은 점수 드렸습니다.</p> <p>(2) 설문 2</p> <p>설문 2의 경우 B는 실시권자이므로, 실시권자가 무효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작성해주시고, 그에 따라 무효심판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잘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신규성 위반이므로 취소신청도 가능하다는 점 짚어주신 경우 추가점수 드렸습니다.</p> <p><b>3. 소결</b></p> <p>충분히 잘 작성하실 수 있는 논점이었음에도 시간관리가 빠아팠던 분들이 꽤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를 고루 잘 푸는 것이 고득점의 핵심인 만큼,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에 경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허법은 최신판례와 전통적인 A급, 단문 문제 등이 상표법 대비 비교적 고루 출제되는 만큼,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충분한 대비와 기본기를 잘 다져두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p> <p>GS 작성하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p>	

19

문제 - 1

1 실용(1)

5.5

1 문제점 - 처항에 의한 실용권

특허권 권용실용권과 권리 특점적 통상실용권 모두 처항에 의한 실용권에 이에 대한 비교를 한다

2 특허 권용실용권 기호 여부 (각각)

"法 101조 1항 2호" 에 따라. 특허 권용실용권을 "등록" 하였으므로 기호 한다

3 권리 특점적 통상실용권 기호 여부 (각각)

특허권은 특점적 통상실용권을 허용하며 甲 특허에 대하여 증명하여 "계약" 하므로 선량한다

4 각 실용권의 공통점

(1) 권용권

특허권용실용권이란 法 100조 2항 규정에 의한 권용권  
乙의 경우 특허권에에 의한 권용권을 취득하게 된다

(2) 특허권자의 부작위 의무

권용실용권은 실용한 권용으로 특허에 부작위 의무 없고  
특점적 통상실용권 실용한 권용으로 특허권에에 대한  
부작위의 의무로 특허권이 부여 된다



## 5 각 실시권의 차이점

### (1) 甲의 실시권 제한

권용 실시권의 경우 법 94조 항목으로 제한되나. 특정권용은 아니지

### (2) 침해금지 청구 방식 - 법 126조

권용 실시권자 같은 법 126조 규정에 따라 청구 가능하고

특정권용 실시권자 같은 특권 행사 제한되고

### (3) 손해 배상 청구 가능 - 법 128조

권용 실시권자 같은 법 128조 규정상 청구 가능 하지만

특정권용 실시권자 같은 권리 제한된다.

### (4) 침해죄 고소 고발 방식 - 법 225

권용 실시권자 같은 고소의 방식이지만 특정권용 실시

권리의 권리 고발의 방식이다

### (5) 허복 관련 권리

권용 실시권자 같은 등록으로 인정되고 (법 101조항목)

특정권용 실시권자 같은 권리에 대해 인정 가능

하다.

## 6 결론 - 2.과 제의 실시권 모두 유효

2과 제의 실시권은 모두 유효하므로 대응하는 한도

에서 침해 대해 청구 가능하다

할 것이다.

I 설문(2)

5.5

1 출제권 - Z의 출제배상 청구권 - 법1282 1항

(과제의 출제에 대해 특허권이 존속하는 출제자에게  
출제배상 청구 가능한지' 중립적 통상 실시권이 출제권자

2 출제배상 청구권의 요건

(1) 구체적인 요건 (판단 필요)

특허권자 또는 출제권자만 행사 가능하다

(2) 시기적 요건 (적극)

법683의 존속기간 내에에만 행사 하는 권이  
원칙이름. 특별히 10년 적용된다

(3) 객체적 요건 (적극)

주요한 특허 발명을 업종으로서 실시 해이하고 경쟁권인  
특정계한 사위. 과잉기술 사위 없어야 한다. 또한  
과외 과실. 출제. 기타 관계가 필요 하다.

3 Z의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 (적극)

(1) 규정 부존재

법 1282 에는 규정상 중립적 통상 실시권자에게  
출제 배상 청구권 인정하고 있지 않다

(2) 합설

(1) 규정 설로 중립적 통상 실시권자로 마땅히 적용 실시권자



고 보아 권용 실시권과 마찬가지로 행사가능하다

(2) 부경설로 구법상 인정하지 않는 이점 특허발명이  
구법적 역할을 고려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3) 취소제 - 부경설

특정적 통상실시권과 는 특허법상 손해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수 없고 관습상 인정

(4) 정호

특정적 통상실시권과 특허법상 손해 배상 청구권 행  
사 가능 하진 하면 특허발명시 구법적 역할을  
고려시 제3자 불리하게 생각 가능성이 크다.

(5) 소결 - 특허법상 손해 배상 청구 불가

근은 특허법상 손해 배상 청구할 수 없다

4 근의 구제수단 - 민법상 불법행위 기한 손해 배상 청구

(1) 관련 취해

특정적 통상실시권 설정 이후 특허권은 침해한 자  
에 대하여 특정적 통상실시권까지 민법상 손해  
배상 청구 인정할수 없다.

(2) 소결

근은 민법상 손해 배상 청구로 구제 가능 하진

5 결론 - 2 특허법상 손해 배상 청구 불가

근은 민법상 손해 배상 청구해야 한다.

IV 실문 13) 3

1 물건 발명 권람 침해 여부 (소극)

(1) 구성요소 대비 원칙과 권리주의 원칙 상 침해 여부 (소극)

각 개별 구성요소를 국내 생산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권리별면제 제도가 해외에서 일어난  
 이점 권람침해가 아니다

(2) 국내 생산 간극 범위 상 침해 여부 (소극)

1) 국내 생산 간극 범위 범위

권람 전부가 국내 생산을 수반하여, 가공 조립이  
 예외적으로 있고 이것이 권리 사외거나 수반하여  
 효과 예측되면 국내 생산 간극 범위

2) 법적 관한 필요성 범위

특히 권리 범위에 예외적으로 인정할 법이 되면  
 법적 관한 필요성 하에

3) 사안의 경우

① 13회 개별 권람이 국내 생산을 수반하여

② 가공 조립이 예외적이지만 ③ 가공 조립이 권리 사외가  
 아니라 ④ 효과 예측이 안되므로 ⑤ 권람침해 아니다

2 제법 발명의 권람 침해 여부 (소극)

제법 발명의 사외이면 사외의는 물건으로 생산물로  
 하는 것은 침해 아니다

## IV 설문(4)

### 1 물건별별의 간접침해 여부 (제한적 작3)

#### (1) 구형상 침해 여부 (43)

##### 1) 생산의 의미 제한 방식

간접침해 유형상 물체 별명 권리를 부당하게 확장  
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으로 해서 생산의  
는 정수 까지 간접침해 생산 확장 못한다

##### 2) 소결

직접침해 가능성 등 고려시, 구형상 침해가 아니라

#### (2) 개량형상 침해 여부 (제한적 작3)

##### 1) 개량법 - 조 12조 1호 (2025.09.22)

진동음은 수동적인 행위로 간접침해 행위 아님

##### 2) 사안적 경우

13종의 개별 진동음 중 "관동음" 소리가 동급의 소리를  
미 있다면 간접침해 인정 가능 하다

#### (3) 소결

13종 개별 진동음 관동음이 있다면 간접침해 인정한다

### 2 제법발명 간접침해 여부 (제한적 작3)

개량법으로 조 12조 2호에 기술이 포함 되도록  
13종 개별 진동음 진동음 여부에 따라 나눠  
된다

11.5

문제 2

I 실문 1) 5.5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1) 존속기간 연장제도 - 법 88조

특허권도 실용 등록 이후 출원 후 20년간 존속한다

(2) 존속기간 연장제도 종류 - 법 89조, 92조

허가 전에 대한 존속기간과 출원 시점에 따른 존속기간에 대한 연장 제도가 있다

(3) 장래로 인정 하기 위해서

허가 전에 출원하기 기간에 대한 인정성 보충하고 등록 시점은 출원 후 20년 이내로 되어 있다.

2 ~~특허 출원 관련 지식재산권 질적 (적격 질적)~~

(1) 관련 규정

1) 허가 전에 존속기간 연장 등록 출원 - 법 89조

출원권자는 허가로 5년 이내 유보성 인정 기간 내 개원 기간 만큼 연장 등록 출원 가능하다

2) 허가 후의 대응 순서

허가 후의 대응은 먼저 나라 내는 출원부분으로 출원 한 신청을 해야 한다.

(2) 관련 취지

1) 양호 나라 내는 출원 부분



회가 등의 재산이 되는 약을 나타내는 불성 불결은  
 승인에서 관한 약사법 해상에 대한 신물권

2) 불성을 가리키는 부분이 결함된 경우

양호한 가치는 관성 부분에 불성을 가리키는 부분이  
이 결함된 경우 여전히 관성 부분으로 한정  
하여 파악해야 한다.

(3) 사안의 경우

1) 의약품 특허 배타권 약효

회가 등의 약효는 다발성 정화증의 치료 효과 이다

2) 약효를 나타내는 관성부분

이 약효 유무 성분인 인터 페르 베라 1-a 가  
 약효를 나타내는 관성 부분이다

3) 제질화로 인한 관성부분 변경 여부 (소극)

제질화로 한때 하리라고 "인터 페르 베라 1-a"  
 는 바뀌지 않는다

4) 제질화된 유효성분이 신물권 여부 (소극)

여전히 인터 페르 베라 1-a 의 회가 범위  
안에 있다.

3) 결론. - 회가 권리 위반, 제질결정

신물권이 아니고 회가 범위로 제질 결정 예상  
한다

Ⅱ 실용(2)

6

1 클레임 - 法 95조

가 동조 특수기간 연방이 된 경우, 보호 범위  
관련 하기 문제가 필요하다

2 항상

- ① 대상물로 해당 제도에 관하여 보호 범위 인정 관계
- ② 주요성분으로 주요 성분이 동일한 경우 보호 범위 관계
- ③ 우호 성분으로 우호 성분이 동일한 경우 보호 범위 인정 관계

3 위사제

(1) 클레 위사제

특히 발명의 안료의 관련 제도를 제외 관계  
하는 경우 침해 성립 한정 보았다.

(2) 크리 위사제

1) 과립의 특성

특수기간 연방 후 특이 특수 관련 하이 유한  
특이 특성 동일한 경우 실질적 동일한  
특이 특성 특이 특성 동일한 경우

2) 명백한 의역 경우

명 백한 의역 경우 하더라도 여전히  
유한 동조 동일 하더라도 실질 동일 하더라도



## 4 권도

~~권도~~ 범위가 너무 좁고, ~~권도~~ 범위를 너무 넓다  
 권도를 고려하여 유사성을 고려하여 판정 하기

## 5 사안의 경우

(1) 플리 JK가 명 변경 여의권 여부 (적극)

플리베타의 숙신산 염을 주요한 명으로 변경할  
 명 변경 여의권 이다

(2) 약리효과에 실질적 동일 여부 (적극)

플리 JK는 플리 베타가 가지고 있는 다발성  
 성질을 치료효과에 유사하게 나타내어 다른 기질이  
 라고 할 수 있다.

(3) 연변경이 균등 여부 (적극)

[과거 개질 권리]를 보면 플리 베타가 이한 자로

예전과 인해 베타 1-a로 출원하고 있고

[약용 효과]로 모두 다발성 전환을 치료효과로 유사하다

[구분변경 동작성]로 동등의 기질가 함께 선택 가능

[소결]로 ~~플리 JK는 균등 범위~~ 이다

(4) 소결

플리 JK는 플리 베타의 본질 범주 내에 있다.

6 결론 - 호적 미결

플리 JK 사안의 유사성 판정 호적이 미결이다

블게-3

18  
6

I 설문(1)-1)

1 항항 2항 취하 취급 - 보정

(1) 관련 규정 - 부록에

일부 취하와 관련된 규정은 없다

(2) 관련 취하제시

보정만 도라출 일부 취하한 시점의 제출 시  
감록으로 보아 보정과 같이 취급 했다

(3) 소결

일부 취하 하는 행위는 항항 2 감록 보정이기

2 리식개선 취하의 반례 취급 적부 (적극)

(1) 보정의 시점 요건 제한 - 법 413 항

3과 불기 라 병리를 기재 보정 요건 과거하여 보정  
시점적 요건 제한 한다

(2) 시점적 요건 위반시 취급 - 규정 113 (반례)

시점적 요건 위반한 보정은 반례 취급한다

(3) 소결

리식 개선 취하의 반례 취급은 시점적 요건 위반한  
항항 2 항에 보정에 타당한 취급이다

3 결론 - 리식개선 취하 취급 타당

일부 취하를 보정으로 보고 반례 취급하여 타당하다

## II 실문 11-2)

1 대응전략 - 거절 불응의 타당성

특423 4항 3에 대한 실례적 판단의 유무에 따라  
판단이 나뉘게 된다.

2 뒤받침 판단 부정시 - 거절 불응 불복 심판 청구

(1) 특 1322의 17항 외의 항

심사비 완전 징수는 위해 가능한 심판이다

(2) 사권적 권리 - 불발 출원

거절이후 발원 1. 3. 4, 5 항은 불발 출원 시도 불가

(3) 사권적 권리 - 분리 출원, 심결 취소 소송

거절 불응 안된 1. 3. 4. 5 항은 분리 출원 시행하고  
2항은 분리 출원으로 심결 취소 소송으로 대응

3 뒤받침 판단 인정시 - 대응 4 항

(1) 특 613의 2 외의 항

현행인 전거는 수배 인정 가능. 대응 4 기조이다

(2) 보정 권속 요인

보정 권속부 수반 요인 인정하고 쉽게 보정한다.

4 권리별 이익

내용과 대응 불복 가할 대응 4, 권리별 이익 심판에 관련된다

II 실용(2)

3.5

1 거절결정 불복 심판 심리 범위

(1) 법 1703 운용 규정 취제

의 1703은 63조와 62조 운용 하므로, 심판 절차로  
 관공상 93 조는 강행 규정에 따라 심판 규정과  
 신의 보호는 5회 이원계를 기피 인공회야 한도

(2) 주권 취리가 부합 하는 경우 취제

심사 단계에서 3은 기본 결정 여과 주권 취리만  
 부합 하는 권속 범위 권조 가능 하리

2 심판원의 절차적 위법 여부 (소극)

(1) 거절 결정 아이다 주권 취리가 부합하리 (적극)

거절 결정을 항항 1 내지 5에 개하여 인공회  
 후에 기해 인공회 기반 관공하고. 종결 원인으로  
 원공명 3 내지 5 관공하므로. "포함" 되어 주권  
 취리가 부합 한가

(2) 실질적 의견 기피 여부 (적극)

~~심사 단계에서 항항 1 내지 5항에 개하여~~  
 인공회 면 후에 인공회 거절아주 통리 하일므로  
법 63조 따라 의견 권속 기피 항보 외외가.

3 결론 - 지식재산 심판원 심판 적법 (적극)



권한과 기법 명이 ~~일부로~~ ~~특정한 사람이~~ ~~있는 한~~  
심결은 타당 하라

IV 실용 (3)

8.5

1 甲과 乙의 특허소유관계 - 공유 (특9921항)

甲과 乙은 甲이 특허권 가분 이전으로 인해 乙  
 발명 X를 공유 한다.

2 A사의 X 생산 방법 행위 침해 여부 (불분명)

(1) X 업으로의 실시 여부 (각각)

A사는 발명 X를 업으로 실시 하는 것으로 甲과 乙  
 의 특허 권리 행사 한다.

(2) A사 실시권 범위 (각각)

1) 특992 4항 의지 취지

특허의 개항 목적 성립상 실시권 범위의 타당성이 존재  
 가 필요하라

2) 사안계 정

~~乙의 권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시권이  
 있는지 알 수 없다

(3) 甲 실시권 범위 적용 여부 (불분명)

1) 특992 3항 의지 취지

특허권은 1인은 특허권이 없는 한 과외 실시 가능하라

2) | 기관설 취소제

공유자 중 일부가 계약을 해피 특허발명 실시에  
 관여 강요하여 5자의 생산 권리를 남지 못한  
 경우 과징금으로 인정한다

3) 사안의 경우

[계약 - 작곡] 부은 A4에게 생산 의뢰 했다

[관리 감독 - 불발명] 부이 A4를 실수로 중지 했다고 확인했다

[전부납출 - 작곡] A4는 권양 부이에게 납출 했다

[소결] 관리 감독 부이에 따라 함께 나뉜다

(4) 소결 -

함께 여부 불발명 다르 모든 병안 살린다

3 A4가 비침해 인 경우

(1) A4 관련 권리 ① - 특허권 행사 불가

A4는 함께가 아니므로 근 권 특허권 행사  
 할 수 없다

(2) A4 관련 권리 ② - 실시권 계약

권 특허권 함께와는 별개로 사가 과외 원칙 상  
 실시 권리 재계약 가능 하다

(3) A 관련 권리 ① - 공유물 분할 행위

부에게 분점 해결을 5대 공유물 분할 행위  
 가능 방식으로 해결 가능하다

(4) 甲 관련 권리 ③ - 현물출판 불가. 대금출판 가능

특허법 상발상 현물 출판 기준지 아니고 대금  
출판 만 가능 하다.

4 ASA가 함께인 경우

(1) ASA 관련 권리

1) 침해금지 청구 (각권)

권지기 보통 행위로 인정 하고 있다

2) 손해배상 청구 (각권) (제한적 적권)

[의 기본 50% 해상 범위 권 가능 하다

3) 침해죄 고소 (각권)

반지사 분별 죄로 권지 상관 없이 가능 하다.

4) 권리범위 확인청구 (소권)

특 134조 3항 상 고유 필수 공공 이익 불가 하다.

(2) 甲 관련 권리

1) 특허법상 권리 (불가)

특허법상 부 이 침해 가 아니 며 별 로 권 보 한다

2) 민법상 권리 (각권)

부당이득 이나 불법 행위 에 유 한 손 해 배 상 청 구 가 능 하다.

3) 특허법 입법 필요

권지 관련 위법 간 호 를 수 해 공 적 인 리 별 하 는

유 견 이 필 요 하다

11.5

8

문제-4

1 원시적 지식 구체 - 공동발명 여부 (각각)

(1) 관련지식 - 法332 2항

발명이 보호된 지체 공동발명은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 지체로 본다

(2) 공동발명 관련 기준 제시

[관련지식 기준] 특허 발명이 기술상 불가피하게 발생하여 공동발명인 경우 판정한다

[관련지식 기준] 발명 완성된 지체 상호 협력으로 하였는지 판정한다

(3) 화학 발명 필수 기재

실용성 공개 발명 사용에 실용성으로 기여하였는지 판정이 필요하다

(4) 사안의 선유 - 구체별 판정

1) 화학 발명 여부 (각각)

브로 분기 초기에서 천연물 X를 추출하는 방법은 실험 등이 필요한 화학 발명이다.

2) 甲 (소지)

甲은 선행 논문 관련 간혹 아이제만 제시하고 실험이라 각각만 판정하며 기여 없다

3) 乙 (각각)

乙는 천연물 X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 제시. 3

구체적인 실례를 통해 발명 요를 구체화 하자.

4) 兩 (각각)

두은 발명 요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발명 요를 구체화 하자

5) ~~상~~ 항역 여부 (각각).

그러 두은 발명 요 항역 여부를 구체화 상 항역 하였다.

6) 소결 - 2과 2의 공통 발명

2과 2의 발명 요 용어적 유사 구체화.

2 A사 권리 이전 적부 (각각)

(1) 법 37조 3항 의의 취지

공자가 보호한 기계 특허 발명 수 있는 권리 이전 금지한다

(2) 4항의 경우

나라 2의 권리 이전시 공유 권리와 2의 순위를  
찾아 볼 수 있음으로 A사 권리 이전은 부호라

3 A사 출원기 하라 (각각)

(1) 법 33조 1항 본 의의 취지

권장권이라 보호한 유제 공정권리에 대한 출원 기명하라

(2) 법 44조 의의 취지

공자가 보호한 유제 공정 특차권인 권등 출원 해야 한다.

(3) 발명가 기계 제1항

특허 발명권 발명권과 기제가 아닌 실용적으로

기여 한가로 찬가 찬가

(4) ~~조결~~ ~~법 333조~~ : ~~5,443~~ 기반

A사출원권 출원인 목적 위반 찬가

#### 4 A사 관련 조리

(1)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출원인 명의 변경 인정

합의는 지식재산기여 출원인 명의 변경 인정 가능하나

(2)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출원인 명의 변경 허용

지식재산기여 출원인 명의 변경 후 시도 찬가

#### 5 특허출원 관련 조리

(1) 정보 제공 - 특허법 33조 2.

출원인 목적 위반을 이유로 A출원에 따라 자 부를  
을 인정 찬가

(2) 발명권 기제 보정 요구 : 특423 1항 4호

발명권 기제 오류로 ~~발명권을~~ 2과 7호  
보정할 것은 99 찬가

## II 실용(2) 3.5

1 특허 하자 정도 - 신규성 위반 (29조 1항)

특허는 권리발명이다 실용적으로 권리 하자로 신규성



51번 사례가 있다.

2 B사의 권리 ① - 후보심판권 - 법132조2

수준리. 특허 청구권 후 6개월 이내에 신성 등의  
사유로 권리 가용 하므로 가용하다.

3 B사의 권리 ② - 후보심판권 - 법133조

(1) 출제권 - 적부 (법133조1항)

동등출제권자인 B에게 이해관계인 적격이 존재한다

(2) 출제 취소제 - 부정

공산 실시권자 특허발명가 권리에 대항 받거나  
대항 받을 명제 없이 이해관계 부정하다

(3) 회전 취소제 - 긍정

동등 실시권자 이로 권리를 불이익 받거나 불이익  
받을 명제가 있으므로 이해관계를 인정한다

(4) 중지 - 심판 계속권 부정합의 부정 취소제

회전 심판 계속권 부정합의 인정하기 안되는 취소제  
회피할 B에게도 이해관계 인정 회전 대항하다

(5) 소멸 - 인용심결 대상

B 사에게 특수인 적격 인정 권리 특별한 사정  
이 안되는 한 인용심결 신로 인용심결 대항하다

※ 추가작성의 경우 [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문제-1>

17.5

I 몇 번

6

1. 전통식식권 의의, 범위 (法 100조)

특정 배타적 실시할 수 있는 실시권을 의미한다.

2. 특약권 동등식식권

(1) 특약권

특약권자는 제 3자에게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으며 제 3자에게 선택할 수 없게 할 의무 때문에 부여할 경우 특약 동등식식권이다.

(2) 사안

특약 제3자에게 특약 동등식식권을 부여할 바 없다.

3. 공동권

(1) 실시할 권리 권리

지, 가 모두 부여 받음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2) 특약권 선택 가능

지, 가 모두 부여 받음을 특약권으로 선택 가능하다.

4. 라이선스

(1) 명문 구경 권리 부여

① 전통식식권 명문 권리 부여 권리 부여 (法 100조)



② 특정 통상시권은 ~~사회적~~ 인정하는 시권이다.

(2) 배타권 존재 여부

① 전통시권은 제 3자의 실시를 배제시킬 수 없지만

② 특정 통상시권은 배제불가하다.

(3) 특허발생연

① 전통시권은 특은 특허 발생연으로 하며(法 103 1항) 특은 특은 마친 바 전통시권인지 여당하

② 특정 통상시권은 특은 제3자 대상연이므로(法 1182) 같은 특정 통상시권과 충돌을 가진다.

(4) 통상시권 소멸가능

① 전통시권과 같은 제3자에게 통상시권을 소멸시킬 수 없지만(法 1003 4항) ② 특정 통상시권과 같은 소멸이 불가능하다

(5) 손해배상청구 (法 1282)

실은 II에 관한 바다 같이 ① 전통시권과 같은 가능하다 ② 특정 통상시권과 같은 불가능하다.

(6) 권해금지청구 (法 1262)

① 전통시권과 같은 가능하다 ② 특정 통상시권과 같은 불가능하다.

(7) 권해회 (法 2253)

① 전통시권과 같은 권해회 인정하나 ② 특정 통상시권과 같은 인정만 가능하다.



II. 선택 2번

55

1. 특허법 128조

과거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특허권자는 침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특허법

(1) 주체적 특허

① 특허권자 ② 전용실시권자가 가능하다 (특허법 128조 1항)

(2) 객체적 특허

① 침해 ② 라이선스 ③ 손해배상 ④ 인격권을 침해한다.

(3) 과실의 추정 (특허법 130조)

침해자에게 침해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특허권자 입증책임 면제를 도모할 수 있다.

3. 주지 지식에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원칙적 소극)

(1) 원칙적

손해배상청구의 주체적 인정 대상 특허권자가 제외되기 앞서 특허권 전용실시권자는 가능한 원칙이다.

(2) 소극적

특허권 전용실시권자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바 특허법상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하다.



(3) 민법 규정 적용 (취지)

다른 권태자가 권태행위를 안 심사한 경우 불법 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4) 특정

① 공익상 등공익 관련이 있는 바 등공익 통상권은 손해배상청구를 긍정하며 ② 부당성은 통상권과는 별개로 배제되어 있는 바 손해배상청구권 부당한다.

(5) 값

법문 해석상 부당성이 타당하다.

(6) 사안

1) 원칙

같은 J에게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다.

2) 예외

J이 권태행위를 안하여 심사한 경우 민법상 불법 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할 수 있다

4 결론

같은 J에게 손해배상청구 불가능하다



# II. 수출 3원 3.5

## 1. 가이 무역 수출방향을 광범위화하기 (수출)

### (1) 수출의 원리 (수출)

특허권의 수출 실시권은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 (2) 수출권한의 원리 (수출)

출구입구의 수출권 권리가 포함될 경우의 국가 수출권한이  
그대로 포함되어야 한다.

### (3) 국내 생산권 (수출)

① 실시를 위한 수출 권리가 생산권이나 수출 권리를 갖는  
반도체가 생산되는 ② 권리의 국제적에 수출권 가능,  
크립이 발생되다 ③ 그 가동, 크립이 국외 실시가능권  
하여 ④ 국가의 수출권한에 포함될 수 있는 것  
국내 생산으로 간주된다.

### (4) 실적해석 (수출)

다만 국내 생산 권리 판단시 실적해석에 대해서 판단  
해야 한다.

### (5) 시장

① 3종 개별 원액 권의 생산하여 ② A국가에 수출  
③ A가 포함하여 수출권 생산하면 ④ 국외 실시가능  
간주하지 않은 바 수출권이 인정된다

2. 가의 특허 방법발명을 각공미하는지 (소)

특허의 원칙에 따라 방법발명 공개가 불응된다.

IV 셋 4번 2.5

1. 농림-청 123

특허권 무효판결권인 바 공개판단 비용이러면 공개판단 권리를 공개로 각공한다. 가의 특허가 각공미하는지 묻는다.

2. 국내생산자주 여부 (소)

(1) 각공미한 공개

특허권이 불응 특허법 있 방식 4년 후 공개 가능 하다.

(2) 생산자의 권한 (구법 제33조)

따라서 청 123 1년 생산 권 국내 생산 권 의 권 한 다.

(3) 2025. 7. 22 개정법

각공 미 한 특 허 권 의 권 한 다.

(4) 사안

가의 특허는 각공 미 한 바 그 권 한 다.

3. 방법발명의 종류 (소)

청 123 2년 후 각공 미 한 다. <끝>

<문제 2>

10

J. 선택 번

55

1. 원법-법 88조

특허권은 발명특허인로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 존속하며 장래에도 소멸된다. 甲의 존속기간 연장 기록은 소멸된다.

2. 장래에 연장기록권

(1) 법 89조 의미, 차이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허가를 위한 사항으로 장래에 소멸된 후 존속기간 연장한다.

(2) 주체적 요건

특허권자가 연장신청해야 한다.

(3) 객체적 요건

특허권자의 주체적으로 소멸된 것은 제외된다(법 89조 2항)

(4) 시기적 요건

최대 5년 전까지 허가를 받은 후로부터 4년을 초과할 수 없는 시기로 제외된다(법 89조 1항)

3. 자식특허의 범위

(1) 약권을 행사하는 범위

① 특허법상 약권을 행사하는 범위의 차이



정해진 바 없이 의 약어법 약호를 사용하는 방식  
특정 허가받은 약호를 의미한다 ③ 전문의의 특정  
허가받은 약호 사용은 예외이다.

(2) 그 가치로 제네랄을 얻을 수 (실패)

전문의의 제네랄을 취득하고 그 가치로 제네  
랄을 가짜 약 방식 특정 허가받은 약호  
방식이나 할 수 없이 특수한 연공을 통한 취득  
이러한 것이 합법하게 타당하다

(3) 사안

1) 약호 사용

특히 최초의 2차 약 제네랄 경쟁자의 제네랄  
가짜 방식 "인타페르베타 - la"가 약호 사용 방식이다.

2) 특수한 연공을 통한 약호 사용 (특)

특수한 연공을 통한 특수한 약호 가짜  
그 가치로 제네랄을 가짜 특수한 약호  
방식 합법하게 타당하다.

3) 실패

특히 특수한 연공을 통한 가짜 약 합법 타당.

4. 결론

가짜 약이 예외이다

II 섹션 2번 ( 5 )

1. 분할 - 1차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특허권의 효력을 상실한 대상  
물건의 신제품개발을 위하여 2차 특허가 개발된 경우  
분리된다.

2. 2차 특허가 생산이 되는지 (2차)

(1) 실행

두 물건의 동일한 지점까지 나아가 유한성,  
크로노라, 용도가 신제품으로 동일한 지 여부 판단  
해야 하며 ~~유도에서 크기가 다르더라도~~ 동일하게  
충분히 "선택가능하게" "크로노라", 용도가 신제품인 동일한지  
판단해야 한다.

(2) 사안

1) 부2 차이

① 부2의 특허비율의 비교할 때 ②는 순수한영역  
포괄영역인 범용비율이다.

2) 크로노라 동일

특허권의 순수한영역의 성질은 비례인 인체의 수준  
유한성의 약비율의 여부 나타내는 크로노라가 서로  
동일하다.

3) 변형이 용이한지 (23)

수상인의 크레 특의 및 합리성을 파악할 때  
이점 동일하다면 공이 널리 알려져 있음의 가설이면  
누구 습기 "선택"하여 변경가능하다.

4) 소경

- ① 甲, 2의 변형이 염증개 크이가 존재하면
- ② 크로바다가 동일하게 ③ 변형 일단 동일하게
- 습기 선택하는 바 ④ 신권작성 동일하다

3. 적용

특허권의 효력이 권리 존속기간의 소멸에 따른다.

5.5 <문제-3>

I

선택 1번-1

1.

본원-보통 (제41조)

출원인 본원을 위해 알권 면하지 발명을 보호할 수  
있을 바 액 쿠키가 가능 리 불능하다

2.

본원 사적 권한 (제42조 1항)

출원인은 알권 사적 내외권 행위를 보호할 수 있다.

3.

특히 액 쿠키의 적법 여부

(1) 명문 규정 문제

특허법은 쿠키에 대한 규정 문제 없다

(2) 액 쿠키 (제41조)

본원의 사적 권한을 규정한 제41조 1항의 쿠키는  
액 쿠키가 가능하면 사적 권한 면하지 알권 면하지  
액 쿠키는 불능하다

(3) 사안

특히 액 쿠키는 불능하다

4

전문

각각의 발명권은 타당하다



II 실패 1-2번1. 가결권을 부여한 경우(1) 가결권부활사건 (法 132의 1)

가결권을 회복하기 위해 큰이웃 승인은 부활할  
가결권을 회복하기 가능하다

(2) 사안

특발성 언어 습득에 관한 경우 무엇 가결권부활사건  
등에 해결할 수 있다

2. 가결권이 타당한 경우(1) 재심 연대의 원칙 (제1회)

일부 청구항이 가결이유가 큰데도 전부 가결되어야 한다

(2) 재심권 (法 61조의 2)

가결권을 회복하기 위해 방을 수반하여 가결권부활  
불부활 상사이다

(3) 사안

무엇 특발성 언어 습득성이 주제에 있을 방기내사  
논쟁을 해야 하 그것이 불가능한 것 삭제불임  
해야 한다

(4) 기타권리

주요한 특성 가 비판권 (法 123), 판사권  
(法 132) 상사이다

Ⅱ. 섯 관 3

1. 농업-권보상 (특 213 조)

가을밭은 국은 가비 통의 가라나 공야근부터 용이  
해에 도라한 인되어 상한이 각법한 리 문가판

2. 상판원의 권리자 하라 큰

(1) 의견제척가비 (제 111)

의견제척가비는 국익 양호한 강행규정으로 상판의  
조항의 상판의 신용을 수함이다.

(2) 주된 권리 부합 (제 112)

가정법으로 상은 국이었던 주된 권리가 부합한 하  
의견제척가비가 불로하다

(3) 사안

1) 주된 권리 부합 (제 112)

국익 양호 나리 국은 인양비명 나리 배비 권보상  
부합한 상판은 상판의 국이었던 주된 권리가  
부합한 국이었던.

2) 의견제척가비 불로

여러 상판은 의견제척가비 국이 국이었던 한 국  
국법이다.

3) 선

결국 하는 큰해비 있다



3. 질문

상업권의 침해에 대한 부정된 사실에 반대는  
특허심판원의 심판은 "타당하다"

II 질문 3번 8.5

1. 甲의 권리 침해 - 침해

(1) 제 992 조

특허권은 각권원인 바 타당하게 인정할 수 있다

(2) 사안

甲이 각권 50% 각권원인 인정된 바 甲의 권리 침해  
인정한다.

2. A의 침해가 침해권원인

(1) A의 권리

1) 제 992 조

특허심판원의 각 권원인 인정된 공정의 권원인 공정을 반대 사실을  
인정한다.

2) 사안

甲이 각권 공정 권원인 A에 침해를 인정한 바  
는 인정한다.

(2) A의 침해를 각권 사실 인정할 수 있다

1) 제 993 조



공유는 각자 자신의 특권을 상실 수 있다

2) 양양권 (對價)

계약상 상대권자의 임의행위 상해를 타인에게  
손해를 상대방에게 남용한 경우 양양권 부여

3) 사안

A사 발명 X 권리를 B에게 양양권 부여  
A사 실사 양양권 권한.

3. A사 B에게 권리를 양양한 경우 A사에 대한 권리  
A사의 양양은 B의 실사 바 A의 실사 양양권 양양  
아닌 권리 양양 수 있다.

4. ~~A사가 B에게 권리를 양양한 경우 A사에 대한 권리~~

~~(1) 양양권 (法 162)~~

1) 양양권 (對價)

특허권 공인 권 양양권 양양 양양 양양  
양양 양양 양양.

2) 사안

공인 A사에게 양양권 양양 양양 양양  
양양 양양 수 있다.

(2) 특허법상 (제128조)

1) 특허권 (제128조)

특허권이 부여된 특허 (인)에 대해 권리 행사 할 수 있다.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사안

주인 A에게 특허권 50%에 대해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주요권리행위권 (제128조)

주인 A에게 주요권리행위권도 행사  
할 수 있다 (제128조)

5. 특허에 대한 권리

(1) 특허에 대한 권리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의 바 특허에 대한 권리 행사

(2) 특허권

특허권자는 특허에 대한 특허권 행사  
할 수 있다

(3) 특허법상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  
특허에 대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다.

<권>



<문제-4>

12

I. 설문 1번

8.5

1. 발명자의 예의 (취지)

발명을 실시하여 기술상의 공익에 신원적으로 기여한 것  
예이다

2. 공정행위의 원칙

(1) 객관적 원칙

기술상의 공익에 신원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2) 주체적 원칙

발명의 행위가 신원적으로 신장하여야 한다.

3. 공정행위의 원칙

(1) 공정행위의 해당 (취지)

사실은 특정 객체, 특정의 제비등을 기술상의 공익에  
신원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2) 공정행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취지)

전혀히 아예아민들 작제하나 의복이나 순백을 위한  
특정까지 불리한 경우 기술상의 공익에 신원적으로  
기여하지 않는다

(3) 특정행위의 경우

발명의 행위를 신장을 통해 구체화하여야 한다.



(3) 특허 청구

특허 신청 내용을 기재하여 "아바나" 라고 기재하고 "실용  
 청구"를 기재한 바 공보발행일이 어음일이 앞선다

(4) 2, 3의 특허

① 2는 천연물 X를 구체적 "실용"을 통해 명세서에  
 ② 3은 실제 실용을 통해 발명 Y를 "구체적"하여  
 명세서에 기재한 바 ③ 2, 3은 실용권한 "상당행위"  
 하여 공보발행일이 어음일이다.

(5) 소송

2, 3의 특허 공보발행일이다.

4. 특허 출원 후의 권리 - 무효판결 (法 332 조)(1) 法 332 조 3항

(공유인 특허) 특허의 특권을 받아 특권을 받지 않는  
권리를 양도 하여야 한다

(2) 사안

2 무효 판결 이후 안정 한 바 특허 출원 권리  
권리 이다.

5. 특허 출원 후의 권리

① 선출원권 이후 부속 판결 (法 363 조 3항) ② 공보  
발행 일 이후 권리 를 가 지 ③ 발명 의 사실 이후 권리 를 가 지.

6. 제1 A사 의한 권리

(1) 출원양해변영신청

A사의 출원된 장 출원양해변영신청 가능

(2) 출원양해변영권

A사 출원된 장 출원양해변영권 가능

7. 제1 출원인 의한 권리

(1) 특허 출원권

A는 발명주체 선정 의무를 가한 바 제1 출원권을 할지

(2) 출원비용 (법 302)

제1 출원 인하여 1년 내의 장 출원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3) 출발점

제1 출원인 출원 후 1년 이내 출원된 특허 A사의 출원권 행사할 수 있다

(4) 특허권 양도 (법 91조 2)

제1 출원인 출원 후 A사의 출원권 양도할 수 있다



II. 실용 권 3.5

1. 특정권 대비 권리 (法 132)

공작성 권리 관련 특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2. 비특권 권

(1) 아내권 (제 131)

특수권 취득으로 발명권 분할은 가능. 이는 아내권취득의  
리유는 각종 특허 아내에게 사적권 공공적  
성질의 발명권 인정할 수 없으며 사적권 공공적  
무엇을 아내 취득 가능

(2) 사안

① 비특 "특"의 특정권인 바 ② 비특 무엇  
성질 발명 분할 가능 수 없음 ③ 비특  
아내 취득 가능

3. 무특권 권

(1) 사안 (法 292 1항)

특수 권취득 개인 바 공작성 발명 인정

(2) 실용 권 (제 131)

공작성 발명 기준 특 공작성 가능  
사적 취득 가능

\* 추가작성의 경우 [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계속 ]



(3) 사안

다시 Y' 발명의 신원성 증명에 바꾸어 발명  
관행이 변화

4. 결론

특정 무관심판, 권상판은 관습이 변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여기에 기재한 사항은 채점하지 않으나, 분리하거나 훼손하면 안됩니다.

※ 채점기준 및 모범답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공개하지 않습니다.

